

조선후기 訓練都監 軍法の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심재우*

1. 머리말
2. 조선후기 군법 집행의 특징
3. 훈련도감의 도망군 처벌과 곤장 집행 지침
4. 훈련도감의 효시형 집행 사례와 특징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訓練都監은 五軍營의 하나이다. 주지하듯이 오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을 가리키는데,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은 가장 이른 시기인 1593년에 창설되었으며 규모도 가장 컸다. 특히 편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훈련도감은 조선전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소속 군인의 경우 이전과 달리 서울에 상주하면서 軍役을 수행하던 상비병이었으며, 아울러 국가로부터 군수품의 지원을 받던 급료병이었다. 훈련도감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중앙군이면서 국가재정 지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군영이었다는 점, 도감군과 그 가족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서울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등에서 군제사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정치·재정·도시사의 영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련도감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중앙 군영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훈련도감의 설립과정, 도감군의 구성과 운영, 도감군의 활동 양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연구서가 간행되어¹⁾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구조와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련도감의 운영 실상에 대해 밝혀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업무를 상세히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장서각 소장 『訓局臚錄』 자료가 아직까지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필자가 최근에 『훈국등록』에 수록된 도감 군사들이 올린 上言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상언에 나타난 군인들의 처우상의 불만, 도감 운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 적이 있지만,²⁾ 향후 『훈국등록』 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훈국등록』을 활용하여 훈련도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필자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훈련도감의 軍法, 그리고 실제 군법 집행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軍法은 넓은 의미에서 군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과 지침을 포괄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군인의 범죄 행위와 처벌 규정을 담은 軍刑法, 軍律의 의미로

1)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訓鍊都監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2) 심재우, 「『訓局臚錄』 인조~영조 대 上言에 대한 연구」 『장서각』 33, 2015.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훈련도감 군사들의 각종 일탈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軍紀 사고 등에서 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훈련도감, 나아가 조선후기 軍營 운영의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군법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비롯한 법전 등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현재로서는 필자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군대에서의 처벌의 핵심인 棍杖刑과 梟示刑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조선후기 군율의 핵심인 곤장형과 효시형의 연원과 의미를 검토한다. 흔히 곤장은 조선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조대 무렵 군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군영에서 곤장을 사용하면서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훈련도감에서 시행된 군법 규정을 살펴본다. 훈련도감 고유의 군법 규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훈련도감의 곤장 집행 지침에 주목하였고, 실제 곤장형 집행의 사례와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훈련도감에서 집행한 효시형 집행 장소와 집행 사례를 분석한다. 효시형은 군대내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도감에서 언제 누구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집행했는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의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한 자료는 장서각 소장 『訓局臚錄』과 훈련도감의 각종 사례와 규정을 모아 놓은 『訓局事例最要』·『訓局總要』,

3) 조선시대 군법, 군율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경국대전』과 『대명률』에서 군사 관계 법률을 발췌, 번역한 『朝鮮時代 軍事關係法』(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1986년)과 이를 활용한 조양수의 학위논문(조양수, 「조선초기 軍律의 정립과 운용」,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구사의 상황에서 필자가 조선시대 군법, 군율 전반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연대기 자료 등이다. 특히 연대기나 다른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훈련도감 소속 병사 처벌에 관한 세세한 사례들을 『훈국등록』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조선후기 군법 집행의 특징

조선시대 군대에서 軍令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軍令, 軍刑법은 오늘날처럼 별도의 법령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 형률을 달리 적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근대적 軍刑법인 『陸軍法律』이 대한제국기인 1900년(광무 4)에 반포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군인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대명률』과 『경국대전』 등 國典에 근거하여 처벌되었다.⁴⁾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대명률』을 조선시대 형사 일반 법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대명률』의 「名例律」, 「兵律」, 「刑律」 항목 등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각 범죄 유형별로 형량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 군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률』의 처벌 기준을 근거로 군법을 집행했다.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受教가 만들어져 『經國大典』, 『續大典』 등에 수록할 수 있었으나 실제 수록된 수교가 많지는 않았다.

본고에서 이들 법전에 실려 있는 모든 軍令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군법 운영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 하는데 『增補文獻備考』의 기사가 시사해주는 바가 작지 않다. 『증보

4) 대한제국기 『陸軍法律』의 내용과 제정 의의에 대해서는 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의 개혁-「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軍史』 89집, 2013) 참조.

문헌비고』 刑考에는 앞서 언급한 『육군법률』이 실려 있는데, 그 앞 부분에 『육군법률』 제정 이전 조선왕조 군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國朝의 刑法은 明律을 襲用하고 『大典』, 『續典』을 이따금 늘리거나 폐기한 것이 있으나, 軍法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梟示하는 울과 棍杖을 쓰는 제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今上 갑오년에 更張한 이래로 비로소 軍人·民人의 分別이 있어 陸軍法律이 광무 경자년에 이루어졌습니다.⁵⁾

위 기사는 『증보문헌비고』 편찬자가 갑오개혁 이후 군인, 민인의 구별이 확실해지면서 1900년에 『육군법률』이 생겨났음을 강조하고, 새롭게 제정된 『육군법률』 이전 시기에는 곤장형, 효시형 외에 별다른 군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기사에서는 『육군법률』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그 이전 조선왕조의 군법을 단순화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기사가 조선후기 군법 운영의 실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좌나 군령을 위반한 군인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진 자의 경우 斬首하여 목을 몇 일간 매달아두는 梟示刑을 시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棍杖을 쳐서 신체에 고통을 가한 후 다시 군대에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군대 내의 형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했던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법 집행시의 형벌인 곤장형과 효시형의 내용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곤장이 만들어져서 사용된 것은 후술 하듯이 대략 선조대 무렵이므로, 먼저 효시형부터 언급한다. 梟示란 사형 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목을 베어 죄인을 처형한 후 그 목을 장대에

5) 『增補文獻備考』 권140, 刑考14 陸軍法律

꽃아 몇 일간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원래 사형수를 처형하여 梟示하는 일은 중국 고대 秦漢 시대부터 시행되었을 만큼 유래가 깊다.⁶⁾ 하지만 『唐律疏議』, 『大明律直解』 어디에도 효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데서 알 수 있듯이 唐律, 明律에 효시는 공식적 사형 집행 방법은 아니었고, 『경국대전』에서도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⁷⁾

이처럼 법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역 죄인이나 중죄수를 참수한 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참수된 목을 공개적으로 걸어두는 일이 조선전기에는 흔한 경우가 아니었다. 즉, 군대에서 효시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의 일이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이 그의 저서 『흙흙신서』에서 대명률의 사형 등급을 凌遲處死, 斬決[不待時斬], 參候[待時斬], 絞決[不待時絞], 絞候[待時絞]로 구분하면서, 梟示는 斬決, 즉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참수하는 不待時斬보다도 무겁다고 註를 단 것에서 보듯이⁸⁾ 효시형은 참수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간주되었다.

그럼 군대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형에 처해졌을까? 1492년(성종 23)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병서 『五衛陣法』에는 군대의 편제와 인원, 전술과 전투 훈련에 관한 사항과 함께 軍令 항목을 두어 陣中의 행동 요령, 진중에서 군법을 어긴 군사에 대한 처벌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진중에서의 군법 집행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 기밀 누설 등 중대 행위에서부터 군기 분실과 같은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수형으로 처단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도미야 이타루, 「공국의 肉刑에서 生命刑으로-漢-唐死刑考-」(도미야 이타루 엮음, 손승희 옮김, 『동아시아의 사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4년) 참조.

7) 조선시대 형량에 따른 범죄 행위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增補文獻備考』에서 볼 수 있듯이 梟示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대명률』에는 전혀 없고 『속대전』에 등장한다(『增補文獻備考』 권139, 刑考十三 「諸律類記」四 참조).

8) 『欽欽新書』 권3, 擬律差例 一. “殺人者死, 法如是足矣。然大明律例, 死有五等, 一曰凌遲, 二曰斬決(立決者, 不待時也), 三曰斬候(監候者, 待時也), 四曰絞決, 五曰絞候(又梟云重於斬決).”

예컨대, 進退와 左右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 徽章과 標識를 잃어버린 자, 군사 기밀을 누설한 자, 적과 비밀리에 내통한 자, 징과 북, 기와 나팔을 잃은 자, 까닭없이 군을 놀라게 한 자, 군중의 문·무관으로서 공평치 못하게 사정을 봐준 자, 멋대로 초소를 바꾸거나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야간 통금을 어기거나, 진중 암호를 잊거나 남의 막사에서 잠잔 자, 主將이 전군에 공통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어긴 자, 禁飮을 범한 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자 등이 모두 참수 대상 죄목이었다.⁹⁾

『오위진법』을 통해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군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효시까지는 하지 않고 대개 참수형으로 집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소한 군기 위반에 대해서도 극형에 처하는 등 규정이 매우 엄한 것으로 봐서 戰時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軍飮으로 봐야 할 것이다.¹⁰⁾ 여하튼 군대 조직 자체가 무기를 사용하며, 유사시 국방 및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전시의 군법은 기본적으로 엄했던 것이다.

방금 『오위진법』의 내용에서 본 것처럼 전시에 군령을 위반한 군인들에게는 斬首라는 극형에 처했다. 하지만 평상시에 모든 군인들을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따라서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가 아닌 한 형장을 가한 후 군대에 복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처벌이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전』 병전에 “行在時 외에 평상시에 軍飮을 위반하여 사형죄를 지은 경우 諸將은 杖刑 60대에 처하고, 軍士는 杖刑 90대에 처한다”¹¹⁾는 조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교든 군사든 중대 군령을 위반했다라도 평상시에는 杖刑으로

9) 『五衛陣法』 「軍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兵將說·陣法』, 1983년, 211-215쪽)

10) 1433년(세종 15)에 간행된 『癸丑陣說』 「軍令」에는 적과 교전 중 군령 위반자에 대한 참수 규정이 앞의 『오위진법』보다 좀 더 자세하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44-247쪽 참조).

11) 『經國大典』 권5, 兵典 「用刑」 “行在時外, 常時犯軍令死罪者, 諸將杖六十, 軍士杖九十”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규정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 실제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군령 위반자를 사형 대신 杖刑으로 대신했는지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여 평시에는 가급적 사형 집행 대신 형장으로 징계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군법 집행에 차이를 두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제 斬首, 梟示刑에 이어서 군대에서 집행한 곤장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명률』의 笞刑·杖刑을 집행할 때 사용하던 회소리 모양의 笞·杖과 달리 棍杖은 배를 짓는 노와 같이 넓적하게 생긴 형상이었다.¹²⁾ 법전에 등장하는 곤장에 관한 규정으로는 ‘軍兵衙門이 아닌 곳에서 곤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新補受教輯錄』에 실려 있는 順治 연간(1644~1662)의 수교가 최초이다.¹³⁾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법전 규정보다 앞선 선조대에 이미 군대에서 곤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몇몇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596년(선조 29)에 都元帥 權慄 장군이 조정에서 왜병의 동태와 자신의 휘하 의병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권율은 선조 임금에게 의병장 金德齡이 軍律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병졸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귀를 자르거나 혹은 곤장을 치기도 하므로 휘하 사람들이 점차 도망간다고 비판하였다. 권율에 따르면 임진왜란 중에 김덕령 부대에서 휘하 군사들에게 곤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한편 1598년(선조 31) 7월 훈련도감의 哨軍 元鑑이 조정에 올린 글에서 당시 군사들이 작은 죄를 범하면 棍杖, 큰 죄를 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고생이 막심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훈련도감에서도 이미 곤장을 사용하고 있었다.¹⁵⁾ 이로써

12) 태·장과 곤장의 규격 차이, 조선후기에 와서 곤장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심재우,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규장각』 22, 서울대 규장각, 1999년)에 상세하다.

13) 『新補受教輯錄』 권5, 刑典 「用刑」, “非軍兵衙門 而用棍者 禁斷 [順治□□承傳]”

14)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19일(병진).

15) 『宣祖實錄』 권102, 선조 31년 7월 12일(을미).

볼 때 대략 선조대인 임진왜란부터 서울의 훈련도감이나 지방의 군대에서 軍務와 관련해서 곤장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선조대 훈련도감 등 군대에서 군법을 집행하기 위해 새롭게 곤장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곤장의 규격을 정비하고, 곤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후 마련되었다. 예컨대 1663년(현종 4) 5월 執義 金萬基 등은 군사를 거느리는 자에게 棍杖을 쓰도록 허용한 것은 軍務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당시 지방의 兵使 등이 간혹 곤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군사들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곤장 남용을 막기 위해 곤장의 길이와 두께를 병조에서 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軍務 이외에는 군인들이 곤장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⁶⁾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6월에 지방의 兵使와 營將이 사용하는 곤장의 크기는 3寸에서 2寸으로 줄이고, 모양도 삼각 형태로 된 것을 兩面 형태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 또한 참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대체하였다.¹⁷⁾

곤장이 이전의 태·장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예 곤장 집행 대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는데, 1685년(숙종 11)에는 군대의 일과 관련해서 곤장을 칠 경우 상한선을 30대로 정하고, 부득이 그 이상 처야 한다면 반드시 국왕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¹⁸⁾ 또한 軍律을 어긴 자에게 군법으로 다스릴 때만 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고을 수령들이 곤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¹⁹⁾

이후 곤장의 규격, 곤장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는 18세기

16)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5월 28일(을미).

17)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6월 3일(기해).

18) 『新補受教輯錄』 권5, 刑典「用刑」, “棍杖 若事係軍務者 則限三十度 隨其罪之輕重或多或少 而多不過定式之內 若其罪犯極重 必加棍數 則具由啓聞後治罪 而或有棍過濫者 勿論被杖者殞傷與否 論以濫刑之律 [康熙乙丑承傳 ○ 依大典 杖一百 徒三年]”

19) 『仁祖實錄』 권49, 인조 26년 11월 6일(병인).

후반 정조 즉위 직후에 다시 이루어진다. 정조는 1778년(정조 2) 각종 刑具의 규격을 통일시켜 관리들의 형장 남용을 막기 위해 『欽恤典則』을 편찬, 반포하였는데, 곤장의 규격과 사용 범위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흙흙전칙』에는 병조 관리, 군영 지휘관 등의 등급에 따라 모두 重棍, 大棍, 中棍, 小棍, 治盜棍 등 다섯 종류의 곤장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들 곤장은 크기와 두께가 각각 달랐으며 곤장을 집행할 때 죄인의 볼기와 넓적다리를 번갈아 치도록 하였다.²⁰⁾ 『흙흙전칙』에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쓰는 치도곤도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곤장은 군영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군법을 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이 이때 다시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조선시대 군법의 골격을 이루는 곤장형과 효시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보면 조선시대 군법의 특징이 첫째, 군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참수에 처하는 등 기본적으로 戰時에는 매우 엄했으나 평상시에는 전시와 달리 가급적 사형 대신 신체형을 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둘째, 군법 집행 양상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 태·장 대신 곤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사형 집행도 참수형에서 더 나아가 목을 매다는 효시형으로 바뀌었다. 왜 이같은 변화가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전란을 거치게 되고 훈련도감 등 새로운 군영이 생겨나게 되면서 군 기강을 더 엄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20) 이에 대해서는 심재우, 앞 논문(1999) 참조.

3. 훈련도감의 도망군 처벌과 곤장 집행 지침

앞 장에서 조선시대 군 형벌의 특징을 곤장형과 효시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중앙군의 핵심이었던 훈련도감에 집중하여 도감에서 시행된 군율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미리 언급할 것은 훈련도감 군사를 규율하는 별도의 군율로 확인되는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에서 새롭게 제정한 군율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훈련도감 군사들만을 규율하는 군율을 특별히 제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일부 조문이나마 분석해본다면 훈련도감 운영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연대기 자료, 『훈국사례촬요』·『훈국총요』 등 훈련도감 사례집, 법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훈련도감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규정, 곤장 집행 지침과 곤장형 집행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군대에서 군인의 무단 탈영 즉 도망병 문제 처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는 서울을 지키는 정예군대로 육성하고자 한 훈련도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훈련도감에서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한번만 탈영한 병사를 처형, 즉 효시형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한, 두 번까지는 곤장형 집행만으로 처벌을 마무리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곤장을 몇 대까지 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훈련도감 창설 이후 17세기까지만 해도 평상시 군대를 이탈한 도망 군사는 처음에는 곤장형을 가하고, 두 번째 도망갈 경우에 비로소 효시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훈국사례촬요』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75년(숙종 1) 훈련도감의 계문에 따르면 도감 군사가 도망갈 경우 곤장 100대를 가하고, 2차로 도망갈 경우에는

習陣日에 효시하는 것이 오래된 군율이라는 언급이 그것이다.²¹⁾ 그러다가 이후 도망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간 완화되었는데 1702년(숙종 28) 어영대장 尹就商이 어영청에서도 훈련도감에서 쓰는 도망 군사 처벌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훈련도감 처벌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훈련도감 군사가 도망가면 初犯은 곤장 50대, 再犯은 80대, 三犯의 경우 梟示하되, 軍物을 훔쳐서 도망간 경우는 초범, 재범 모두 효시를 한다는 것이다.²²⁾ 이 무렵 도망병에 대한 곤장 대수도 줄였을 뿐 아니라 세 번 도망간 삼범의 경우만 효시하도록 제한한 것인데, 이 규정은 모든 군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군율로서 영조대 『續大典』에 실리게 된다.²³⁾

그런데 정조대에 오면 훈련도감의 도망 군사 처벌 규정이 다시 약간 바뀐다. 『萬機要覽』에는 1779년(정조 3)에 다시 조정된 규정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망 군사들의 초범은 곤장 50대, 그리고 재범 시에는 효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官馬나 군대 물건을 가지고 도망한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효시형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도망갈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一律로 다스리도록 하였다.²⁴⁾ 이상 보았듯이 훈련도감 소속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도망병 문제는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그 처벌의 수위를 놓고 계속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골격은 평상시에는 대개 초범은 곤장형, 재범 때 효시하였으며, 전쟁 중에는 초범, 재범할 것 없이 바로 효시로 처단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이어서 살펴볼 것이 훈련도감의

21)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22) 『肅宗實錄』 권37, 숙종 28년 11월 20일(정묘).

23) 『續大典』 권5, 兵典 「用刑」, “軍兵逃亡 初犯決棍五十 再犯八十 三犯梟示”

24) 『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逃律」

곤장 사용 지침이다. 앞서본 도망 군사 문제는 처벌 규정이 受教로 마련되었을 정도로 중대 사안이지만, 조선후기에 이보다 작은 사안들은 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교들이 소속 병사들의 잘못을 징계할 수 있었고 이 때 棍杖을 형장으로 사용하였다. 훈련도감에서도 군내 기강을 확립하고 군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군기 위반자를 곤장으로 다스렸다. 훈련도감 장교들이 사용하던 곤장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정조대 『흙흙전칙』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의거하면 모두 다섯 종류의 곤장 가운데 重棍은 訓練大將, 大棍은 훈련도감의 都提調·訓練大將·中軍, 中棍은 훈련도감의 從事官·別將·千摠, 小棍은 훈련도감의 把摠·哨官이 군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각각 사용할 수 있었다.²⁵⁾

고종 연간에 편찬된 『훈국총요』에는 훈련도감 장교들의 소속 군사들에 대한 곤장 사용 매뉴얼을 12개 조문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았는데, 이 조문을 통해 곤장 사용과 관련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앞서 『흙흙전칙』에서 제시한 것처럼 훈련도감 소속 장교들의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곤장을 지정하였다. 즉 소속 병력이 적은 훈련도감 步軍의 把摠·哨官·旗隊摠은 小棍을 쓰며, 이보다 상급 지휘관인 步軍의 千摠, 馬兵의 別將은 中棍을 쓰도록 하였다.

둘째, 지휘관이 소속 군사들에게 15대 이상 곤장을 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예하 부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곤장 대수를 이보다 더 제한하였다. 예컨대 別將과 千摠은 소속군사에게는 곤장 15대를 상한으로 하고, 다른 부대 소속 군인에게는 이보다 적은 곤장 10대로 제한하였다. 把摠의 경우 소속 군사에 집행할 수 있는 곤장 상한은 15대로 동일하나, 다른 부대 소속 군사에게는 상한이 곤장 7대이다. 이런 식으로 哨官, 旗摠·隊摠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25) 『欽恤典則』 「棍」

26) 12개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訓局摠要』 「用棍式」 참조.

셋째, 훈련도감의 堂上將官의 경우는 근무 중일 때 牢子棍을 쓰도록 하였다. 뇌자곤은 『흙흙전칙』에 언급되지 않은 곤장이라 19세기에 새롭게 쓰기 시작한 곤장으로 보이는데, ‘牢子’가 군영에서 지금의 헌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군사인 軍牢를 말하므로 뇌자곤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훈국총요』에는 비록 어떤 범죄나 군기 문란에 대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지만, 훈련도감 장수들의 곤장 사용 권한 등에 대해 촘촘하게 제시하였다. 군영 내에서 군법을 집행할 일이 있더라도 곤장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수, 그리고 처벌 대수 등을 정해놓아 곤장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했던 것이 본 규정의 골자인 것이다. 특히 장교들이 소속 군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곤장 대수를 15대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곤장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조대 훈련도감 陞戶軍 가운데 도망간 이들이 규정대로 곤장 50대를 맞다가 죽는 일이 간혹 발생하였고, 위력이 강력한 곤장임을 감안하여 도망군사에게 가하는 곤장 대수를 현행 법 규정보다 줄이자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⁷⁾ 이로 비추어 볼 때 탈영이라는 중죄가 아닌데도 지휘관이 소속 군사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곤장을 남용하여 군인을 죽이는 불상사를 막자는 취지가 위의 『훈국총요』의 곤장 사용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軍令을 위반하거나 軍陣의 군사훈련이나 열병 도중 문제를 일으킨 경우 앞서 살펴본 소속 군사뿐만 아니라 군영의 장교, 심지어 양반 관리들도 곤장으로 다스렸다. 이는 훈련도감이 조선후기 궁궐 숙위 및 서울을 수비하는 대표적인 주력군이라는 점에서 훈련도감 軍陣의 위엄을 유지시키고 군법의 엄중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662년(현종 3)에는 국왕이 鷲梁 백사장에서 閱武하다가

27) 『訓局謄錄』 38책, 乙巳(1785) 7월 1일.

훈련도감 陣이 느리고 진퇴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中軍 鄭傳賢과 마병의 別將 鄭漢驥에게 각각 곤장 20대, 곤장 7대를 집행하였다.²⁸⁾ 이보다 2년 뒤인 1664년에는 春塘臺에서 觀武才를 실시하면서 말 달리는 솜씨가 떨어지고 기예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정원 兵房承旨에게 지시하여 훈련도감 초관 吳愷에게 곤장을 치도록 하였다.²⁹⁾ 또한 다른 군영 소속 장교를 훈련도감에서 처벌하기도 하였는데, 1767년(영조 43) 영조는 수원의 馬兵이 매우 허술하고 말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선전관의 조사 결과를 전해 듣고 지휘 책임을 물어 담당 別將을 훈련도감 훈련장인 沙場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조리돌린 후 곤장 10대를 집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³⁰⁾ 軍營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휘를 맡은 장교도 경우에 따라선 곤장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軍令을 위반한 경우 문반 관리도 때론 곤장형을 받기도 하였다. 숙종 때 왕의 행차 때나 훈련 때 훈련도감 軍陣의 대오를 범한 관리를 곤장으로 엄중 문책한 사례가 있었는데, 1697년(숙종 23) 병조정랑 李坦의 경우가 그 한 예이다. 이 해 숙종은 중국 칙사를 맞이하는 거동을 하고 환궁하였는데, 국왕을 호위하던 훈련도감 陣이 파하기 전에 병조낭청 이탄이 陣中을 충돌하여 지나가려고 한 일이 있었다. 이 때 砲手 范善奉이 그를 제지하였는데, 이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범선봉의 正妻를 잡아 옥에 수감한 일이 훈련도감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었다. 숙종은 軍令을 위반한 이탄이 비록 군인이 아닌 조정 관리이지만 軍律로 처벌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그를 훈련도감에서 곤장으로 다스리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에 승정원에서 병조 관리를 훈련도감에서 곤장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고 건의하여 결국 이탄은 병조에서 곤장 30대를 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³¹⁾ 그만큼

28) 『顯宗實錄』 권6, 현종 3년 9월 12일(임오).

29) 『顯宗實錄』 권8, 현종 5년 4월 11일(계묘).

30) 『英祖實錄』 권108, 영조 43년 5월 14일(정축).

31) 『訓局事例撮要』 上卷, 「論罪」 肅廟朝二十三年(康熙十六年) 丁丑 十月初四日 기사

궁궐 및 도성 숙위의 주력 군영인 훈련도감을 국왕이 특별히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39년(영조 15)에도 훈련도감 군사들이 행진할 때 武藝別監 鄭秀才가 말을 몰아 훈련도감 마병진을 가로질러 가려다 군병이 막아서면서 소란이 발생했다. 영조는 군이 행진할 때 陣內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자는 軍律로 처단하는 것이 節目임을 강조하고, 정수재를 훈련도감에서 從重決棍하도록 지시하였다.³²⁾ 이는 앞서 소개한 병조 정랑 이탄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련도감에서는 군 내부의 규율과 군기의 확립을 저해하는 군사들의 경우 소속 장교들이 곤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아울러 국왕을 호위하는 주력 군영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훈련도감 군대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소속 장교, 훈련이나 행군 때 軍陣을 침해하는 관리들도 군율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곤장형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4. 훈련도감의 효시형 집행 사례와 특징

가. 효시형의 집행 장소와 방법

지금까지 곤장형과 효시형 집행이 중심이 된 조선후기 군법의 특징, 훈련도감에서 운용된 도망병 처벌 규정과 곤장 사용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규정과 실제 운용 양상을 함께 살펴보아야 군법 운영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 『肅宗實錄』 권31, 숙종 23년 10월 4일(신해).

32) 『訓局事例撮要』 上卷, 「論罪」 當寧十五年(乾隆四年) 己未 八月 二十日 기사.

장에서 군율에 규정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훈련도감에서의 군법 집행 사례를 관련 기록에서 추적하여 제시한다. 특히 군령을 위반한 군사들에게 가한 극형인 梟示刑에 주목하여 효시형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가능한 선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효시형은 죄인을 처형한 후 참수된 목을 몇 일간 장대에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죄인을 참수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처형된 목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에서 『대명률』의 참수형보다도 무거운 사형 집행 방법인 셈이다.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사형집행 방법의 하나로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시형은 대규모 반란의 首魁와 國賊에게 간혹 시행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도망병 등 군사들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효시형 처벌이 늘어났다.³³⁾ 원래 효시형은 군율이었지만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효시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17, 18세기에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조선후기의 법전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續大典』에 효시형을 규정한 조문이 모두 85조에 달하게 된다.³⁴⁾ 효시형이 조선후기에 군법을 집행하는 군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종종 시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군영에서 군법으로 집행한 효시형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데, 먼저 집행 장소 문제이다. 당시 효시형 집행 장소가 늘 일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훈련도감에서 형을 집행할 때 주로 이용한 곳이 鷺梁沙場이었다.³⁵⁾ 노량 사장은 지금의 노량진 건너편 노들강변의 넓은

33) 안더스 칼슨(Anders Karlsson), 「千金의子是 저자에서 처형되지 않는다-17-18세기 조선시대의 사형과 효수-」(도미야 이타루 엮음, 손승희 옮김, 앞의 책, 2014년), 155-161쪽 참조.

34) 이들 법전을 분석한 안더스 칼슨에 따르면 효시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병사들에 관한 사항 외에도 청인 및 일본인과의 접촉, 북병 변경에 관한 범죄 등이 대상이었다(위의 책, 162쪽).

35) 이하 軍門梟示의 장소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서술은 주로 샤를 달레, 『한국천주교

모래밭인 새남터를 말하는데, 당시 이곳에 軍營 군사들의 훈련 敎場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형 집행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그런데 고종 때인 1867년에 노량 교장이 여러 차례 홍수를 겪어 훼손되면서 군사 훈련 장소로 적합하지 않게 되자 교장을 蔓川坪으로 이전하였고, 이때부터는 노량 사장이 아닌 만천평에서 주로 형을 집행했다고 전한다.³⁶⁾

형의 집행은 군사들이 翳陣을 하기 위해 집결하는 날에 거행되는데, 軍營의 대장, 즉 훈련도감의 경우 훈련대장이 형 집행을 주관하였다. 효시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대개 檻車라 부르는 수레에 실려 노량 사장에 도착하게 된다. 형장에 도착하면 얼굴에 석회를 칠하고 등 뒤에는 나무를 끼우고 뒷짐 결박을 했으며, 양쪽 귀에는 貫耳箭³⁷⁾이라는 짧은 화살을 썬 상태로 조리돌림[回示]을 하였다. 조리돌림은 훈련을 위해 모인 병사들에게 죄수에 대한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처형장에는 조용히 하라는 뜻에서 나무에 ‘肅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肅靜牌³⁸⁾를 높이 세워놓았으며, 사형수의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양쪽 귀에 貫耳箭을 썬 상태로 얹어놓고 목을 베었다. 이후 죄인의 머리는 장대 등에 꽂아 몇 일간 매달아 두었다.

참고로 군영에서 사형 집행을 맡은 병사는 특별히 ‘劊子手’라 불렀는데, 이들이 형을 집행할 때 쓰던 칼을 月刀 또는 偃月刀라 했다. 『만기요람』에는 당시 운영되던 군영의 병력 규모와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훈련도감에 회자수가 6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한편, 회자수는 鬼巾이라는 두건을 쓰고 鬼衣를 입었

회사』 상(분도출판사, 1979년), 114-115쪽 및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1』(청년사, 2001년), 202-207쪽에 의거하였다.

36) 차기진,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 2011, 80쪽.

37) 貫耳箭은 몸이 짧고 축은 뾰족한 모양이었다. 죄를 진 군사의 귀를 꿰어서 조리돌림할 때, 혹은 비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다(『萬機要覽』 軍政篇 1, 形名制度).

38) 肅靜牌는 바탕은 흑색이며, 글씨는 희게 썼다(『萬機要覽』 軍政篇 1, 形名制度).

39) 『萬機要覽』 軍政篇 2, 훈련도감 「軍摠」

으며, 평상시에 挾刀을 들고 대장이 타는 말 머리에 마주서게 되어 있었다. 鬼巾은 홍색 문양의 명주를 녹색 명주에 붙인 것으로 두건 뒤쪽은 발꿈치에까지 이를 정도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鬼衣는 홍색 무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⁴⁰⁾ 이상의 내용이 훈련도감 등 군영에서 행한 효시형 집행의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매우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중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효시형 집행의 사례

훈련도감에서 집행하는 효시형은 많은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형 집행을 통해 남은 군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의식으로도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 효시형을 시행했는지 보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훈련도감에서의 효시형 집행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① 동료 살인 및 군기문란 행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 위력을 실감한 조선에서는 훈련도감에 주력군으로 砲手를 배치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감군이 총기를 휴대하면서 조총을 이용한 범죄나 오발 사고가 간혹 발생하였는데, 그 한 예가 1643년(인조 21)에 훈련도감 군사가 동료 군사를 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다.⁴¹⁾ 사건은 이 해 10월 14일에 발생하였는데, 右哨軍 申海龍, 朴成吉 등이 廳會, 즉 모임이 있다고 속여 동료 군사 金振聲을 삼청동 北門으로 유인한 후 날이 저물자 신해룡이 김진성을 조총으로 쏜 사건이었다. 총에 맞은 김진성은 마침 지나가던 哨軍 咸應元, 捕盜軍官 南弘纘에게 평소 자신과 사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40) 『萬機要覽』 軍政篇 2, 훈련도감 「服着」

41) 『訓局謄錄』 2책, 癸未(1643) 10월 15일, 10월 21일, 11월 3일자 기사 참조.

동료 신해룡이 자신에게 총을 쏘었다고 진술하고는 결국 죽고 말았다.

훈련도감에서는 궁궐이 가까운 곳에서 동료 군사를 총을 쏘서 살인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여겨 즉시 조사에 나섰다. 도주한 박성길은 추적하도록 하였고 신해룡은 그의 집에서 체포하여 진술을 받아냈다. 신해룡은 처음에 오발 사고일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도감에서는 추운 계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유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범행 장소로 갔다는 점, 신해룡이 평소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자백을 받아내었다. 결국 훈련도감에서는 이 사건이 살인과 관계되지만, 초군이 서로 죽인 것은 軍法에 斬首에 해당한다며 국왕에게 軍中에서 처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달인 11월 4일 훈련도감에서 습진하는 날에 신해룡을 효시형으로 처형하였다.

방금 본 동료 초군에 대한 총기 살해 사건만큼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숙종 때 훈련도감의 고위 지휘관인 千摠 閔任重의 군기문란 사건도 있었다. 1710년(숙종 36) 훈련대장 李基夏의 보고에 의하면 천총 민임중이 자신의 처를 서울에서 하룻길 떨어진 근교에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소속 군병 백 여명을 함부로 동원하여 役事를 돕게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친위병인 훈련도감 군병들을 대거 자신의 개인 일에 동원하여 숙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조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 군율에 의거하여 처형할 것인지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 줄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숙종은 군영의 기강을 엄히 하고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법으로 효시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전시에 군사를 일으킨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사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임중을 훈련도감에서 곤장 30대를 친 후 의금부로 보내 邊遠充軍하도록 지시하였다.⁴²⁾

42) 『訓局臚錄』 15책, 庚寅(1710) 윤7월 12일 : 『肅宗實錄』 권49, 숙종 36년 윤7월 1일(갑오) 및 윤7월 24일(정사).

아울러 이 사건에 연루된 상, 하급 지휘관들도 함께 처벌하였는데 中軍 南五星은 汰去, 哨官 李世進 등은 決棍 20대 후 태거, 別武士 3인은 決棍 30대 후 태거, 牌頭 등은 決棍 50대 후 保人으로 강등, 旗摠은 決棍 30대로 처리하였다.⁴³⁾ 훈련도감 병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와 같은 중대한 군기문란 행위에 대해 숙종은 군율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효시하는 대신 변경 지역에 충군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전사와 달리 군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참작하여 減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임진, 병자호란을 거치고 전란의 위협성이 상당히 해소된 숙종, 영조대의 사례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②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군무 이탈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대체로 평상시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도망한 군사는 극형인 효시형으로 다스리는 기초를 유지했을 정도로 탈영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무거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영 생활의 피로와 고충으로 인한 병사들의 근무지 이탈이 근절되기는 어려웠고, 정예병사로 육성하기 위해 소속 군사들에게 급료를 지원하는 훈련도감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사안이었다. 애초 훈련도감이 창설되면서 소속 군사를 모집할 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숫자를 할당하여 서울로 차출하는 방식의 陞戶制를 운영하면서 일부 군사들의 불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아울러 도감에서 지원하는 급료가 군역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군사들은 도감군에 차출된 불만,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上言을 국왕에게 올려 대책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⁴⁴⁾

43) 『訓局謄錄』 15책, 庚寅(1710) 윤7월 13일.

44) 『訓局謄錄』에 실려 있는 훈련도감 군사들이 군병 차출에 대한 불만, 급료 인상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올린 상언의 내용은 심재우, 앞 논문(2015), 97-102쪽 참조.

이하에서 살펴볼 도감 군사들의 탈영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먼저 1629년(인조 7)에 도주했다가 체포된 馬兵 李應善이 효시형으로 처형된 사례이다. 이응선은 단순한 탈영이 아니라 官馬를 데리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였는데, 그는 도주 후 삭발하고 얼굴을 변장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었다. 훈련도감에서는 도망이라는 균을 범했고 戰馬까지 도적질하였으므로 陣 앞에서 효시하여 여러 군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상주하였다. 그러면서 전례를 거론하였는데, 그 이전의 哨軍 吳立(정묘년), 朴應吉(갑자년), 黃達文(갑술년)이 모두 赴防하였다가 도주하여 효시되었다는 것이다.⁴⁵⁾

이처럼 훈련도감 창립 초기부터 현종대까지 도망 병사에 대해서 대개 정해진 균율에 입각하여 엄중 처리하였는데, 다음에 언급할 哨軍 李玉男, 그리고 哨官 宣貴榮의 도망에 대해서 규정대로 효시한 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1657년(효종 8) 2월 훈련도감의 계문에 따르면 군역에 염증을 느껴 지난 갑오년에 고향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곤장 80대에 처해진 바 있던 別中司 後哨軍 이옥남이 작년 겨울에 또 다시 도망하였다가 체포, 압송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도감에서는 도망 재범자를 처벌하는 규정대로 翫陣日에 군중에서 효시하도록 요청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⁴⁶⁾ 1668년(현종 9)의 사건은 일반 군사가 아닌 장교급의 초관 선귀영이 탈영한 사안이었다. 그는 형조에서 다른 사람과 소송을 벌이다가 문제가 생겨 두 번 탈영하였다가 將官이라고 해서 참작해주지 않고 규정에 의거하여 앞의 이옥남과 마찬가지로 효시형에 처해졌다.⁴⁷⁾

그런데 숙종, 영조대에 오면 도망병사에 대한 처벌의 기류가 이전

45)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仁廟朝 七年(崇德四年) 己卯 二月初六日 기사.

46) 『訓局謄錄』 4책, 정유(1657) 2월 8일

47)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顯廟朝 九年(康熙七年) 戊申 二月 十三日 기사.

과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이 포착되는데, 도망자 처벌에 관한 군율에 의거하여 규정대로 처형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곤장형으로 감형해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예컨대 1675년(숙종 1)에는 같은 해 발생한 두 사안의 탈영사건에 대한 처벌이 달랐다. 훈련도감군 申植는 갑인년에 한 차례 도주한 바 있었는데 다시 도망갔다가 체포되어 2차 도망의 경우 습진일에 효시한다는 전례에 의거하여 효시하는 것이 결정되었다.⁴⁸⁾ 반면 哨軍 金命善의 경우는 달랐다. 김명선은 이미 전에 두 차례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는데, 그때에도 그의 용맹함을 높게 평가하여 규정대로 사형에 처하는 대신 곤장 100대를 때리고 군에 배속시켰었다. 그런데 또 다시 신의와 같은 해에 은을 훔쳐 도망가자 훈련도감에서는 습진 때 효시할 것을 청하였으나 숙종은 그의 무예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군졸들을 撫恤하는 때라는 이유를 들어 곤장 50대를 가하는데 그쳤다.⁴⁹⁾

영조대 발생한 훈련도감 哨軍 金漢重의 탈영 사건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숙종 때 있었던 김명선의 경우처럼 특별히 가볍게 처리된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729년(영조 5) 황해도 鳳山 출신의 陞戶軍이었던 초군 김한중의 집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잣더미 속에서 두개골을 비롯한 불에 탄 해골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여러 가지 정황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훈련도감에서 황해병 사에게 김한중의 고향 마을 동태를 파악하게 하여 마침내 살아있는 김한중을 적발, 체포하게 된다. 결국 김한중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해골을 가져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군대에서 벗어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훈련도감에서는 비록 1차 도망이지만 사안이 중대함으로써 김한중을 효시형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조는 규정상 도망병의 초범과 재범의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48)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肅廟朝 元年(康熙十四年) 乙卯 正月 十九日 기사.

49) 『訓局謄錄』 5책, 을묘(1675) 11월 19일 및 11월 20일 ;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1월 19일(계묘)

곤장 100대로 마무리하였다.⁵⁰⁾ 이들 사례는 훈련도감 창립 초기인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원칙에 의거하여 도망병을 처단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전쟁 상황이 종식되고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율 적용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⁵¹⁾

③ 무신난에 가담한 반란군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 사안과는 좀 다른 戊申亂에 가담한 반란군에 대해 훈련도감에서 효시형으로 처형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조선후기 군영에서는 군사들의 탈영, 살인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극형인 효시형을 시행하였지만, 이 외에도 반란 首魁와 대역 죄인에 대한 군법 집행도 담당하였다. 병력을 동원한 반란 사건은 전시에 준해서 일이 처리되었는데, 특히 이들에 대한 효시형은 중앙군의 핵심인 훈련도감에서 주로 주관하였다. 『훈국등록』의 기록에는 이인좌의 난 관련자들에 대한 효시형 집행 기록이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728년(영조 4) 3월 19일에는 李麟佐와 鄭希亮 등이 청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서울에서 호응하기로 했다는 죄목으로 소론 南泰徵, 閔觀孝, 愼光遠, 李世龍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비록 양반 관리지만 거병한 반란군을 군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훈련도감 陣 앞에서 참수되어 장대에 매달려 효시되었다.⁵²⁾ 그런데 이들 반란군들의 경우

50)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當宁 五年(雍正七年) 己酉 十月 日 기사; 『英祖實錄』 권24, 영조 5년 10월 9일(경술).

51) 이밖에도 1715년(숙종 41) 궁궐 宿衛軍이 궁궐 내에서 입직하다가 軍裝 등을 버리고 밤에 무단으로 도주한 사건도 참작 처리된 사건의 예이다. 그는 훈련도감 포수 安守雲인데, 숙종은 효시하는 것이 軍律을 엄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적과 대치중이 아니니 참작하는 것에 좋겠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翫陣 日에 군사들 앞에서 곤장 100대를 가하도록 조치하였다(『訓局臚錄』 19책, 乙未(1715) 9월 18일, 10월 3일, 10월 8일; 『肅宗實錄』 권56, 숙종 41년 10월 8일(경오)). 이는 앞의 김명선, 김한중에 대해 효시형 집행을 하지 않고 곤장으로 처리한 사례와 유사하다.

주로 앞서와 같이 훈련교장이 있던 노량 사장에서 거행하는 대신, 효시형을 집행할 때 도성 안 훈련도감군의 陣 앞이나 종로의 鐵物橋 거리가 자주 이용되었다. 예컨대 이인좌 무리가 충청도에 들이닥치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반군에 협조한 회덕현감 金道應, 황간현감 李挺徽 등을 효시할 때,⁵³⁾ 문경현에서 체포되어 압송된 죄인 李萬光을 효시할 때⁵⁴⁾ 모두 훈련도감에 의한 형 집행이 철물교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반란을 주도하다가 전투 중 참수된 鄭希亮, 李熊輔, 羅崇坤에 대해서는 머리를 서울에 보내 처단한 역적의 머리를 국왕에게 올리는 의식인 이른바 ‘獻馘禮’를 거친 후 장대에 꿰어 매달아 효시하였다. 『훈국등록』에 실린 기록을 보면 당시 서울로 보내진 정희량 등의 머리는 헌곡례가 열리기 전까지 光熙門 안 훈련도감 화약고 안에 소금을 담가 보관하였다.⁵⁵⁾ 그리고 헌곡례는 四道都巡問使 吳命恒을 국왕 영조가 崇禮門 門樓에 올라가서 영접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⁵⁶⁾ 이외에도 무신난에 연루된 반란군을 훈련도감에서 처형한 많은 사례들을 『훈국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신난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역모 죄인을 군율에 의거하여 처형할 때 훈련도감이 주관하여 효시형으로 집행하였다.

52)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3월 19일.

53)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4월 6일.

54)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4월 15일.

55)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4월 14일.

56) 『英祖實錄』 권17, 영조 4년 4월 19일(기해).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대표적인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 군법의 특징, 실제 군법 집행의 사례와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훈련도감이 조선후기 중앙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 관련 기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들 자료만 가지고는 훈련도감 군법 집행의 실상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훈련도감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기록이 담긴 『훈국등록』과 관련 사례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훈련도감 검토에 앞서 조선후기 군법의 골격을 살펴보았는데, 조선후기 군율에 의거한 처벌의 핵심은 곤장형과 효시형이었다.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 곤장을 쳐서 군대로 복귀시킨 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경우는 참수형보다도 무거운 효시로 처단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곤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형 집행도 참수로 그쳤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후기에 곤장형과 효시형이 정착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전란을 거치면서 군 기강을 더욱 강화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의 창설과도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훈련도감에서 시행된 군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훈련도감에서 소속 군사들을 규율하는 군율은 많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도망 병사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곤장 사용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망병사에 대한 처벌은 초범은 곤장형에 처하되 여러 번 도망간 경우는 효시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군무 이탈 행위에 대해 무겁게 다스리도록 정비하였다. 그리고 곤장 종류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휘관의 범위, 곤장의 최대 집행 범위 등 곤장 사용 지침을 촘촘히 규정하여 도감 장교들의 소속 군사들에 대한 곤장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훈련도감에서 집행한 효시형의 실제 집행 사례를 추적하였는데, 크게 동료 살인 및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효시, 도망 군사 처벌로서의 효시, 무신난의 반란 주도자들에 대한 효시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서 동료를 살해한 행위나 반란을 일으킨 행위와 같은 경우 군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형하였으나, 전란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평화가 지속되는 숙종, 영조대에 오면서 도망 군사에 대해서 극형인 효시형 대신에 곤장으로 참작, 처벌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법 적용을 원칙대로 하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군법에 주목하여 훈련도감 운영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군인을 다루는 군법은 원칙적으로 엄정한 것이 생명이다. 다만 이를 현실에서 그대로 따르면 너무 각박하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군 기강의 문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조선후기에 군영을 중심으로 곤장형과 효시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전란을 거치면서 엄정한 군법 적용의 필요성이 공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후기 숙종대 이후 국왕들은 훈련도감 군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되게 군법을 적용, 집행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련도감에 대한 국왕의 높은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글은 곤장형과 효시형이라는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군법 집행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만들어진 다양한 군율과 군법 체계 전반을 다루지 못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 왔던 군법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6.9.30, 심사수정일: 2016.11.18,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訓練都監, 軍法, 棍杖刑, 梟示刑, 『訓局臚錄』, 哨軍, 砲手, 도망 군사
[逃軍], 『欽恤典則』, 軍令

<ABSTRACT>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Law[軍法]
observed by the Hun'ryeon Dogam(訓練都監) office and the
Futures of Executions by Decapitation(梟示刑)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period

Sim, Jae-Woo

What I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Military Law observed and implemented by the Hun'ryeon Dogam office, in ord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office itself, which was the most characteristic Joseon military installation established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having been operated. And to do that, this article attempted a more detailed look into Hun'guk Deung'rok, which was a compilation of operational documents generated by this office but for some reasons was not previously analyzed that much carefully. Also, certain relevant cases are presented here in this article.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Joseon period Military Law reveals that the most prominent forms of punishment were either by decapitating one's head and hanging it up(梟示刑), or flogging(棍杖刑). It was especially so in the latter half period, as dictated by military regulations. In the dynasty's early half, the flogging stick(棍杖) was yet to be devised, and decapitation was not followed by hanging the person's severed head up. But after the 1590s' war with the Japanese, new practices were employed, hence the practice of 'hanging the decapitated head,' or 'flogging a person.'

Examined next are military regulations observed inside Hun'ryeon Dogam, through punishments meant for deserters and rules used for capital execution. In case of deserters, first time offender was simply flogged, but multiple offenses were punished by decapitation, followed by the practice

of hanging the head up, so we can see desertion was never tolerated. Instruction that were to be kept in mind, in case of using the flogging stick, was also carefully drafted so that the officers would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in implementing the flogging practice.

To be examined lastly were the actual examples of decapitating someone and hanging the severed head up. Case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punishment of a soldier or officer who murdered a colleague or breached military discipline, punishment of a deserter, and punishment of the riot leaders who staged an insurrection in the Mushin/戊申 year. Murdering a colleague or staging an insurrection were met with the most deadliest punishment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reigns of kings Sukjong or Yeongjo, when the war was long past and peace was being maintained, deserters were treated with mild punishments comparatively other than decapitation with their heads to be hung up. In other words, they were flogged instead. We can see that the authorities were trying to implement law, not so strictly to the letter but rather flexib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Key words : Hun'ryeon Dogam(訓練都監), Military Law(軍法), Flogging(棍杖刑), Decapitation and hanging one's severed head up(梟示刑), Hun'guk Deung'rok(訓局騰錄), sentry(哨軍), gunner(砲手), deserter[逃軍], Heum'hyul Jeonchik(欽恤典則), Military Regulations(軍令)

